

S-OIL 협력사 ESG 행동규범

S-OIL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 (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로 하여금 인권 및 노동, 환경, 안전 및 보건, 기업윤리 분야에서 최선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OIL은 본 행동규범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전자구매시스템 (<https://epro.s-oil.com>)을 통해 협력사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S-OIL은 상호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소속 국가의 법규와 다른 경우, 소속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지켜야 합니다.

인권 및 노동 (Labor & Human Rights)

가) 차별 금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고용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조건은 요구하지 않으며, 임신여부/장애 등 신체적인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을 고용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나) 강제노동 금지 및 근로 조건 준수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는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은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만 15세(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을 안전 보건 위험이 큰 작업 또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라)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협력사는 소속 국가의 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불이익한 처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협약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도

협력사는 임직원들의 근무 상 고충사항,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의 수렴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탄력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 제도를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환경 (Environment)

가)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 경영

협력사는 환경 경영 전략 또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환경 관련 인증(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환경표지 등)을 보유하여 환경 경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 교육 및 전담 조직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적교육 이외의 내부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
으로 하여금 협력사의 환경 경영 전략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라)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원부자재(사무용품 등 포함)
의 목록화 및 재고관리를 실시하는 등 자원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에
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도입, 공정개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마) 환경오염의 예방

협력사는 조직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오염물질(대
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협
력사는 제품 또는 서비스 설계 시 환경성(자원절약,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가능성, 유
해물질사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도입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활동에도 힘써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Safety & Health)

가) 산업안전 관리

협력사는 근로 장소 및 환경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작업
환경 내 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 소음 등)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되
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안전관련 인증을 보유하여 안
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힘써야 합니다.

나) 비상사태 대응

협력사는 자연 재해, 집단 감염, 화재, 공습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대피요
령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실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 사고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보건 관리

협력사는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기숙사, 식당, 체력단련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검진(일반/특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윤리 (Ethics)

가) 투명한 경영 준수 및 반부패

협력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선물 등의 뇌물수수, 알선, 청탁 등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협력사는 이러한 임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 거래

협력사는 공정 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담합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의 임직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다) 정보 유출 금지

협력사는 제품 및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타사의 제품 및 기술을 탈취해서도 안됩니다. 협력사는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 등)의 개인정

보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라) 직원 교육

협력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반부패/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투명 경영, 공정 거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